##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3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유용원·성일종·안철수

김예지 · 김기웅 · 임종득

권성동 · 서천호 · 강대식

김 건 · 조승환 · 신대욱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제9차 개정 당시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2015년 체결된 한미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법의 목적에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

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조).

법률 제 호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구"를 "평화적 연구"로, "복지증진"을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u>연</u>	제1조(목적) <u>평</u>
<u>구</u> ·개발·생산·이용(이하	화적 연구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	
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	
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u>복지증</u>	<u>ଧ</u>
<u>진</u>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류사회의 복지증진
다.	